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8

2016-8호



-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 조례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등 5건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6건
-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등 5건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논산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서울시의회 편의시설 활성화 및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등 3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3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전라북도 부안군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군민 감면을 적용 관련 등 2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충청남도 주요 제 · 개정 조례

-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5)
- ▶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7)
- ▶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 ▶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 · 육성에 관한 조례 (12)
- ▶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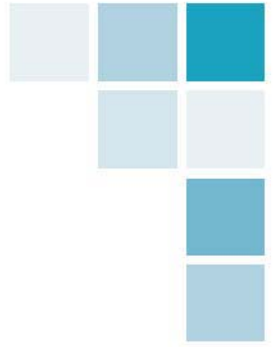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7)
-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
-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5)
- ▶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7)
- ▶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9)
- ▶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33)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 ▶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39)
- ▶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42)
- ▶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 (45)
- ▶ 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47)
- ▶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 (49)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논산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52)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 서울시의회 편의시설 활성화 및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59)
- ▶ 경기도의회 저성장 시대 도시주택 정책방향 합동연찬회 개최 (61)
- ▶ 전남도의회 풍력발전 설치기준 마련 및 소음피해 원인 규명 촉구 (62)

최근 제·개정 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4)
- ▶ 의료법 시행규칙 (67)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70)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전라북도 부안군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군민 감면율 적용 관련 (72)
- ▶ 경상남도 양산시 –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관련 (76)





충청남도 주요 제 · 개정 조례



1.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16.9.30.] [충청남도조례 제4164호, 2016.9.30., 제정]

□ 주요목적

「문화재보호법」 제6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충청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남도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단)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조사관을 시·군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
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판정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조사관의 임기·복무·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장, 국외소재문화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9.30.] [충청남도조례 제4165호, 2016.9.30., 제정]

□ 주요목적

충청남도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그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학교·가정폭력, 재해·재난, 발달 심리상의 어려움 등 과도한 위협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지사의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시책에 협조하고, 청소년 중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시책 및 이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4조(권리보호) 도지사 및 교육감은 청소년이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7조의 추진사업
3. 기관·단체 등과 협력 및 기반 구축
4. 교육·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치료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 중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협조하고, 해마다 학생 사회심리적 외상 치료(개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해마다 학생에 대한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전문가 소진예방 지원
6. 실태조사
7.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 소재 다음 각호의 관계기관·단체와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군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4. 충청남도교육청
5. 지방경찰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9.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는 제1항 각 호의 관계기관·단체 소속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통합적 안전망의 결성
2. 추진사업의 시행
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비밀엄수)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전담기구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9.30.] [충청남도조례 제4166호, 2016.9.30., 제정]

□ 주요목적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및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이·미용서비스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발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표창) 도지사는 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충청남도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9.30.] [충청남도조례 제4168호, 2016.9.30., 제정]

□ 주요목적

충청남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충남도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농수산물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
3.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 의 인원수, 위촉절차, 그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모범사업자 선정·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해당 생산업·가공업·유통업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이하 “시책사업”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그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시행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의 구체적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정산 및 평가)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완료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결과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하여 그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각급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모범사업자 및 시책사업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방법,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9.30.] [충청남도조례 제4173호, 2016.9.30., 제정]

□ 주요목적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충청남도 병역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홍보) 도지사는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에게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예우)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가 도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는 해당 병역명문가증과 도의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예우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9.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29호, 2016.9.29., 제정]

□ 주요목적

사물인터넷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물인터넷”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2. “사물인터넷도시”란 사물인터넷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민의 실생활 및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 ②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물인터넷도시의 기본 추진 방향
2.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자문단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비전 및 전략 수립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선제적 도입·적용 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또는 첨단 디지털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
2.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
3. 사물인터넷도시 브랜드화 추진에 관한 사업
4. 사물인터넷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업
5.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및 제3조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2.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기반설비 구축 지원

4. 기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시민,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 등 사물인터넷 기술 관련 개발자들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험·제작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2. 시민을 위한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의 운영·관리

3. 제10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9.21.] [부산광역시조례 제5415호, 2016.9.21., 제정]

□ 주요목적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현황·여건 및 전망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 기반구축사업
 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시 기술개발사업
 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대여 및 체험·교육 등 홍보사업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사업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이 시역 내로 이전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개발의 장려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

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고령친화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고령친화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24조(포상)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3.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9.29.] [인천광역시조례 제5709호, 2016.9.29., 제정]

□ 주요목적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4·19혁명,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전시·편찬사업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천민주화운동센터)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9.29.] [경기도조례 제5335호, 2016.9.29., 제정]

□ 주요목적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통폐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출연기관을 말한다.
2. “통폐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이 같거나 비슷한 계통의 여러 출연기관을 없애거나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통합기관”이란 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의 조직과 사무를 인수받아 존속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폐지기관”이란 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합기관에 조직과 사무를 인계하고 해당 조례의 폐지에 따라 소멸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통폐합의 기본원칙) ① 경기도는 출연기관의 유사·중복업무를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폐합되어야 한다.

- ② 출연기관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통폐합되어야 한다.
- ③ 출연기관의 통폐합은 기관의 공공성,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④ 출연기관의 통폐합은 폐지되는 기관의 설립취지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⑤ 통합기관은 폐지기관과 동수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폐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기관의 통폐합) 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 및 인

적·물적 시설 등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통합하며, 그 명칭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한다.

② 경기영어마을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 및 인적·물적 시설 등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통합한다.

③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서로 합의하여 출연비율 등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도·감독 기관을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출연기관의 통폐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출연기관의 통폐합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출연 등) ① 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해산되는 폐지기관의 잔여재산 중 경기도에 귀속되는 재산은 해당 통합기관에 출연한다.

② 도지사는 폐지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③ 통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통폐합의 보고와 조사) ① 통합기관의 장은 기관의 통폐합에 관한 결과를 통합기관의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변경 지정·고시의 신청)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의 출연비율이 경기도보다 높게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주된 출연자를 수원시로 하는 출연기관의 변경 지정·고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9.30.] [전라북도조례 제4328호, 2016.9.30., 제정]

□ 주요목적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교류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생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노인이 경작하는 텃밭,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도시농업공동체”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하여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에 관한 계획은 전라북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실태 및 현황
2. 도시농업 육성 지원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홍보방안 등
6.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방안
7. 도농교류와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보급 방안
8. 그 밖에 도시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자재 등의 관리, 처리기준, 교류·협력 사항
4. 공익형 도시농업 활동의 촉진과 장려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활동의 촉진에 규제가 되는 각종 제도의 검토 및 정비
6.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촌 교류 확대 등 도시농업 과제와 대안제시 사항
8.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활성화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육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사례 발굴 등) 도지사는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농업공동체 및 교육기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도시텃밭 조성·경작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전문인력 양성사업,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시행 2016.9.29.] [울산광역시조례 제1637호, 2016.9.29., 제정]

□ 주요목적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스스로 참여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창의성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자신의 소질·적성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상담, 직업체험, 진로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 ② 모든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⑤ 학교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 ⑥ 학교는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진학지도와 취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진로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진로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
2. 진로교육 홍보
3. 방문 진로상담·진로체험처 안내
4. 진로교육 및 정보의 수집·제공
5.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6.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진로교육시행계획) 학교의 장은 진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진로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진로교육 평가) 교육감은 제6조의 진로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진로교육을 보조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진로심리검사) 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진로상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진로상담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진로교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한 개인의 상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정보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제11조(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구·군 지방자치단체별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 센터를 운영할 경우 구·

군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기관을 지정 ·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
2.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진로교육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보급 지원
4. 진로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
5. 진로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
6. 진로교육 관련 타 시 · 도와의 교류 · 협력 및 정보 수집
7. 진로교육 컨설팅
8.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인력배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지역 센터는 지역 실정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 활용지원, 진로체험 등 지역내 진로교육을 지원한다.

제12조(학교진로활동실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내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구축하여 학교진로활동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전문적 진로체험 활동 지원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전문학과 등에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직업체험기관 지정) 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연구학교 지정 · 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에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진로교육 기관·단체 등과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의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울산광역시진로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진로교육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대학교수, 지역 경제계 인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진로전담교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⑦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할 때

3.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업무의 실효성있는 시행 지원
 4.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⑩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⑪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시행 2016.9.19.]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161호, 2016.9.19., 제정]

□ 주요목적

양구군 읍·면 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을주민 간의 화합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 (이하 “공동이용시설” 이라 한다)이란 양구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읍·면지역에 설치된 마을회관·경로당·건강증진실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4.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해당 시설물의 수리 행위를 말한다.
6.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지원)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공동이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마을회에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2.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매입
3. 공동이용시설의 부속시설(화장실 등) 신축, 개량

제5조(우선순위) ① 공동이용시설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 안에서 신축
2. 건물 안전진단결과 부적합 건물 재건축
3.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한 리모델링(보수)
4. 증축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건축연도가 오래된 순위와 수혜가구가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공동이용시설의 신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
2. 기존의 공공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한 마을
3. 인구,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공동이용시설이 협소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마을

② 공동이용시설의 재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로서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기가 극히 어렵거나 보수비가 과다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수하여도 건물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2.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부적합 건물로 판정된 공동이용시설
3. 재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③ 증축기준은 신축한지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로 인구증가 등으로 공간 협소 또는 마을 주민의 복지공간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리모델링 기준은 신축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로 건물유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또는 재건축 규모는 제7조에서 정한 기준이내로 하며, 마을회관·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 자체 확보(해당 마을회 및 노인회 또는 건물 존속 시까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서 확보)된 마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단,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리 또는 신설된 마을에 대하여는 군에서 부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공동이용시설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을 안의 건축물을 매입·임차하여 공동이용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등) 공동이용시설의 신축·리모델링 등 시설개선관련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자부담은 10% 이상으로 한다. 단 신설된 마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수행 등) ①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을에서 해당 보조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마을회 대표 이장이 되고, 위원장은 마을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부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호선하여 둘 수 있으며, 사업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총괄하고, 보조사업 추진을 주관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지원기준 금액 한도 안에서 설계하여야 하며, 지원기준 금액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한다.

제9조(행정재산의 사용 등)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군이 구입한 재산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보조금으로 취득 또는 신축 등을 한 공동이용시설의 양도·교환·대여·담보 등에 대하여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또는 「양구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2.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시행 2016.9.29.]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371호, 2016.9.29., 제정]

□ 주요목적

「청소년 기본법」 제5조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 주요 내용

제2조(기본이념)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청소년은 제외한다.)
2. “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 자치권”이란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산시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의 정보접근에 대한 계획
3.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방안
4. 추진 사업 목록
5. 재원의 조달방법
6. 민 · 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참여)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에 대해 군산시 청소년의회,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밖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앱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모바일 앱에는 청소년 관련 행사, 정책, 사업, 예산 등이 알기 쉽게 홍보한다.

③ 모바일 앱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의 자치권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청소년의 자치권을 홍보한다.

1. 시홈페이지, 열린시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에 청소년 자치권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 · 법률 관계자 그 외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청소년의 자치권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학교, 청소년 관련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청소년 자치권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자치권 평가)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제시에 대한 평가하고 이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임기는 평가기간으로 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

1. 업무담당 과장
2.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7명 이내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소속 2명
4. 시의회의원 1명

② 평가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실행사항을 평가 한다.
2. 청소년 참여를 위한 모바일 앱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3.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해 평가한다.

③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사항은 기본계획수립 및 차기년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정읍시 전통산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9.2.]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422호, 2016.9.2., 제정]

□ 주요목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전통산업점포”란 동일업종에서 20년 이상 전통을 계승하며 운영하고 있는 점포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점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산업점포 지정을 위해 정읍시 전통산업점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통산업점포 지정·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전통산업점포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통산업점포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산업점포로 지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토속운영 또는 가업계승 운영 점포
2. 20년 이상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널리 애용되어 온 점포
3. 고유의 상업풍경 조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포

② 전통산업점포 심의 방법,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전통산업점포로 지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상업점포 지정서 교부 및 지정 표찰 설치
2. 시설개선,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3.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체험·홍보 공간 등 제공
4. 그 밖에 전통상업점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통상업점포로서 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장을 정읍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4. 그 밖에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4. 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시행 2016.9.21.]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444호, 2016.9.21., 제정]

□ 주요목적

광양시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악기연주를 포함한다),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 환경조성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 가. 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 나.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지원
- 다.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재능나눔 활성화

- 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 나. 시 소재 관련 사회적기업과 단체의 발굴·육성 및 지원
- 다.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천 등) ① 읍·면·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지역주민, 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중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질서유지) ① 공연자는 무분별한 거리 공연이나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활성화사업에 공이 뚜렷한 지역주민, 공연자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

[시행 2016.9.23.]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276호, 2016.9.23., 제정]

□ 주요목적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시책에 대하여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 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기타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논산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16. 9. 22.(목) /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총 평



논산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천연자원 등의 합리적 개발을 통해 논산시의 관광자원을 개발

하고 탐정호 주변의 활성화를 통해 내실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참석자 대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논산 관광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특히, 논산시 관광활성화 전략으로 ①훈련소 연계 관광활성화, ②탐정호 개발, ③유교문화자원 연계 상품개발, ④논산시 특성을 반영한 관광상품개발 등을 제시함

또한, 논산의 기자원인 육군훈련소와 연계한 국방전력지원체계 연구소 유치, 국방산업 육성등 명품 국방도시를 건설하여 특화하고, 논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탐정호 관광지개발사업에 있어서 규제 완화 및 주민과의 협력·소통을 통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제기되었음



주요 토론 내용

① 주제발표

< 지진호 (건양대학교 교수) >

○ 현대인의 관광욕구는

- 녹색관광 : 농촌관광의 확대,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 동시 추구, 농촌의 환경과 자연생태, 체험, 도농교류 확대 목적
- 슬로우라이프 : 인간적인 삶의 추구, 노스텔지어 욕구, 슬로우 시티 지정 등으로 관광객 증가
- 스토리텔링 : 전 산업분야에 스토리텔링 기법 도입, 체험거리 개발
- 융·복합형 관광 : 콘텐츠 관광자원 개발, 의료관광, 에코투어등

○ 논산시 관광활성화 전략으로

- 훈련소 연계 관광활성화 전략 제시 : 연무안심시장(먹거리촌 조성), 군용물품 도깨비 시장 등
- 강경젓갈시장 연계 관광활성화 전략 제시 : 금강 황포돛배 운항, 젓갈축제 활성화 등
- 탐정호 개발 제시 : 자연친화형 숙박시설단지 조성, 탐정호반 야영/캠핑 페스티벌, 탐정호반 힐링길 조성 등
- 유교문화자원 연계 상품개발 제시 : 충청유교문화원 건립(국립 인성교육원 유치),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 관광 상품 개발 제시 : 소액, 소규모의 논산 특산품 관광상품 개발

- 마지막으로 KTX논산역 유치, 세종시 기능 확대등 관광여건 개선을 통해 관광산업을 논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2 지정토론

① 최종인 (충청남도 관광기획팀장)

- 논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수준 높은 역사문화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이 필요하며,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로드맵 구축」
 -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인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 강경근대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근대역사문화촌 조성, 신노리 자연문화예술촌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고려시대 사찰 문화재 등
- 「탐정호 수변개발종합계획」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뚝 높이기 사업(445억, 완료), 농산물직거래 장터, 딸기 체험지, 수상펜션, 전통문화체험과 병영체험지 조성, 계백장군 묘 및 백제군사박물관 연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인접시·군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충남도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의 지속적 유도가 필요

② 황인혁 (논산시 미래사업과장)

- 논산의 이미지 전환을 위한 「논산 브랜딩 개발」의 필요성
 - “논산 = 훈련소” 이미지 탈피 : 지역장점, 발전 비전 및 특성이 드러나는 논산만의 관광슬로건 개발
-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발굴
 - 연간 130만명의 면회객 및 주요 방문객 요구 맞춤형 콘텐츠 발굴
 - 주중주말 방문객 분석을 통한 주요 타겟 설정 및 필요성 분석



- 부족한 자원 극복을 위한 「콘텐츠 확보」
 - 방문객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콘텐츠 중심 사업 구상
- 관광객 체류 기반조성을 위한 「숙박 인프라 개발」
 - 체류형 관광명소 및 관광목적지 개발 (숙박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 및 관광형 숙박시설 도입 등)
 - 「시유지 활용 민자유치」를 통한 콘도미니엄 유치 및 탐정호 인근 시유지(청소년 수련원 도입 등)

③ 김경태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 「관광거점지구」 조성
 - 단기적 관광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광개발계획」 수립
- 다양한 「특화관광상품」 지속적 개발
 - 기존 논산훈련소 활용 관광상품 개발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상품 개발 필요
- 「관광마케팅」 전개
 - 논산훈련소와 계백장군 유적지등의 호국이미지 지속적 개발 및 새로운 관광이미지 개발
 - 여성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 전개 필요
 - SNS등을 활용한 마케팅과 지역의 재래시장, 상권의 특화관광상품 개발 등

④ 김용훈 (논산시 기자협회장)

- 「탐정저수지 개발계획」 실효성 제고 필요
 - 토지주·관·시민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공청회 개최 요구

- 백제문화제 공동개최지 지위 획득 및 황산벌 전투재현행사 등의 백제문화제 공식프로그램 지정 강구
- 「유교문화유산의 관광자원 개발」 필요
 - 돈암서원 인근 유교체험마을과 노성의 충청유교문화원 연계
- 「논산 8경의 재정비」와 관리 철저
- 논산시 관내에 산재한 「폐가정비대책」 및 「축사의 청정 환경대책」 마련

⑤ 서정환 (탐정호 상인번영회장)

- 탐정호 주변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개발」을 유도함이 바람직
-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현장의 상황 파악 및 탐정호 주변 개발 필요와 공청회 개최

③ 청중토론 등

- 탐정호 주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개발 유도과 관주도의 일방적 추진 중인 탐정호 종합개발사업의 현실화 필요

[질의: 가야곡면 지역주민]

- ⇒ 1.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하며 관위주의 일방적 사업추진은 불가
- ⇒ 2. 논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 관광개발계획」 수립 필요

[답변: 전낙운 충청남도 도의원]

- 탐정호 수량 확보를 위해 지자체간, 타기관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

[김용훈 기자협회장]



-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논산시 관광개발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민관협력체의 정기적 정례화가 필요

[김경태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 대둔산도립공원 연구용역 착수하였고, 10월경 주민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탑정호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개최 계획 중임

[전낙운 충청남도 도의원]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탑정호 주변 과도한 규제 완화 대책 마련
 2. 탑정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의 현실적 방안 강구
 3.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 등의 주민주도적 활용방안 강구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논산시의 관광자원인 탑정호 개발 기본방향 설정의 중요성 인식
- 지역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발전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서울시의회

편의시설 활성화 및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0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편의시설 활성화 및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과, 법 규정의 한계로 실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편의시설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제도 보완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홍보 등 큰 역할을 담당하는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센터의 인력과 예산 보강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박마루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고, 최광훈 센터장(서초구 편의시설지원센터)이 ‘무장애 도시 서울을 위한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로, 성기창 교수(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

과)가 ‘편의시설 중심 유니버설디자인 실현을 위한 노력 및 증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윤두선 지회장(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 이운용 사무처장(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김순심 기술요원(노원구 편의시설지원센터)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 발표를 했다.

박마루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례 제정, 관련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편의시설 활성화 촉진대회」를 열어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저성장 시대 도시주택 정책방향 합동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경)는 10월 19일 양양 솔비치호텔에서 ‘저성장시대 경기도 도시주택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경기도 도시주택 현안에 대한 대안모색과 협력방안 구축을 위하여 도시주택실 관계공무원 등 40여명과 합동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저성장시대 경기도 도시주택 정책방향’에 대하여 전문가 특강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과 ‘경기도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도시주택실 주요현안을 보고받았으며, 그리고 특별강연으로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도시관리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기존 도시주택정책은 성장중심, 주택공급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중심, 주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하며,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매입·전세입대 사업의 확대,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효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이번 합동연찬회를 통하여 ‘도시주택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설치기준 마련 및 소음피해 원인 규명 촉구

전라남도의회는 10월 10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풍력발전시설 소음 피해 원인 규명과 주거지와 거리 등 설치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이하,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올해 초 전라남도 실태조사로 확인된 소음과 저주파 등 주민건강 피해 호소에 대한 정밀조사 추진과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또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할 때 도·시군 지자체 사전협의를 법제화 하고 민가와 의 이격거리, 소음, 전자파 등 기준마련과 ‘육상풍력 개발 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우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풍력발전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소음과 저주파 피해 등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원인규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내져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3.1.] [대통령령 제27546호, 2016.10.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통지 단계부터 읍·면·동의 장과 초등학교의 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초등학교·중학교의 장,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및 출석 독촉 등 단계별 관리방법을 구체화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하여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과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내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읍·면·동의 장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 절차 보완(안 제17조)

읍·면·동의 장이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취학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취학명부를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생의 전학 절차 개선을 통한 취학 관리 및 학생 보호 강화(안 제21조, 안 제73조제2항 신설)

1)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취학 및 출석 관리가 공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경우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편

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2)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가 법원에 청구된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

다.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 강화(안 제25조 및 제26조, 안 제92조의2 신설)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하지 아니하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취학 또는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통보된 미취학 아동이나 결석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독촉이나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해당 학교에서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취학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안 제25조의2 및 제

27조의2 신설)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경찰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 의무 대상 아동이나 학생 등의 취학관리, 미취학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경찰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2.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6.] [보건복지부령 제442호, 2016.10.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 및 입원진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제도를 도입하며, 감염병의 유행 시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 제공 기관 및 제공 절차 등을 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조사·분석·공개를 위한 내용·방법 등을 정하며, 감염병 유행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교육의 내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보존대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의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기관 및 절차(안 제1조의4 및 제1조의5 신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또는 환자의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등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로 하고,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함.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를 받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처방전의 기재 사항 확대(안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를 각각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그 기재 범위를 확대함.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안 제42조의3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함.

라. 감염관리실의 설치·운영 등(안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안 별표 8의3 신설)

1) 2017년 3월 31일까지는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는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 각각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함.

2)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간호사 및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배치기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의 병원의 병상 수에 따라 각각 규정함.

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안 제46조의2 신설)

1)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염병의 내용 및 성격,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감염병의 관리, 보건의료인 등의 보고·신고·협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매뉴얼·게시물 등의 작성·비치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3)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에 관한 주의·경계 또는 심각한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회 이상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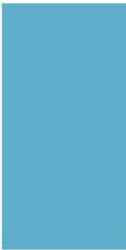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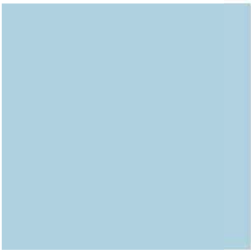
[시행 2016.10.6.] [총리령 제1324호, 2016.10.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괄재난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방재실이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26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중앙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방재실 설비 중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초고층 건축물로 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전라북도 부안군 -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안전번호)의견16-0239, (회신일자) 2016-08-24

【질의요지】

가.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상기 가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면, 각종 시설별로 각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일괄개정이 가능한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안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경우 그 개정 방식은 조례의 개정 목적, 내용 및 형식,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개정 방식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부안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체결한 자매결연 협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안군 시설의 관람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카목에 따른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하여 부안군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안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안군 시설의 감면율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안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는 상기 질의 가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면, 각종 시설별로 각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일괄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 간에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p. 341~345. 참조).

다만,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할 때에도 제한 없이 이질적인 조례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 조례가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8. 19. 회신, 의견 11-0172 참조).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 조례의 개정 목적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으로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라면,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의 측면에서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수 조례를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이한 다수의 조례가 하나의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상태에서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개별 조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부안군 시설에 대한 조례가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조례 별로 관람료, 사용료 등 감면율을 적용하는 시설이용료의 명칭이 다르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 본문에 규정한 경우도 있고, 별표에서 규정한 경우도 있는 등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의 방식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경우 그 개정 방식은 조례의 개정 목적, 내용 및 형식,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개정 방식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관련)

(안전번호)의견16-0212, (회신일자)2016-08-26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

【의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규칙에 재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양산시가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에서 기준이나 고려사항 등 그 대강은 직접 정한 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유】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이하 “양산시조례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



조), 제2조에서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2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의 서류를, 제3호에서는 그 밖에 양산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영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규정의 취지상 양산시조례안과 같은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제1호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제2호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제3호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가목에서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는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4호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4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15의2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별표15의2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를 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9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그 하위의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 15. 의견 13-0413 참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시설 또는 장소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소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양산시조례에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조례에서 정하기에는 양산시의 사정이 가변적이어서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밖에 없다면, “양산시장이 음식판매자 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과 같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고려사항 등 그 대강을 조례에서 직접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규칙에 재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양산시가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양산시조례에서 기준이나 고려사항 등 그 대강은 조례에서 직접 정한 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6년 10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